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양식

2019년 4월 15일 / 방콕지사

구 분(택1)	핵심내용
(기타)	☐ 태국 과일채소주스음료 소비세 0% 혜택 규정 변경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대처방안	
☐ 주요내용 - 태국 소비세국은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소비세 0% 혜택 적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본 공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본 공지는 태국 국민에게 더욱 건강한 음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 투명하며 위생적이어야 한다. - 과일채소주스음료는 첨부된 목록에 있는 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야 하며, 첨부된 목록에 없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 있는 재료들로만 심사하여 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과일채소주스음료 제품의 포장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제조공장과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음료의 주성분 및 내용량 - 유통기한 등 - 과일채소주스음료 소비세는 현재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이 14g미만의 경우 1ℓ 당 0.5바트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2019년 10월부터는 1바트, 2021년 10월부터는 3바트를 부과한다. 설탕 함유량이 14g이상의 경우 1ℓ 당 1바트의 세금이 2019년 10월부터는 3바트 2021년 10월 1일부터는 5바트를 부과한다. - 아래 태국원본 및 번역본 참고	
☐ 시사점 및 대처방안 - 태국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2017년 9월 16일 아시아 최초로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일명 설탕세)를 부과하였는데 올해부터 그 규정이 점차 강화된다. - 최근 태국 정부 정책과 함께 소비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서는 플레이버 워터, 무-설탕 음료, 무-알콜 음료 등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 발표일자/출처 : 2019년 1월 9일 / 태국 소비세국	

태국 소비세국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소비세 0% 세율 적용을 위한 방법 및 조건에 관한 규정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소비세 0% 세율 적용을 위한 방법 및 조건을 2017년에 제정된 소비세 세율에 관한 법률 02.03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제 1조

과일채소주스음료라 함은 과일이나 채소로 만들며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₂)가 없고 카페인 함유량이 리터(ℓ) 당 5mg 미만인 음료수를 말한다.

제 2조

소비세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일채소주스음료는 다음과 같다.

- 2.1.과일채소주스음료는 과일이나 채소가 첨부된 규정 목록에 있는 재료 사용과 재료 비율에 따라야한다. 과일 채소주스음료에 첨부된 목록에 없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된 목록에 있는 재료들로만 심사한다.
- 2.2.과일채소 외의 다른 재료는 물, 설탕, 자연 감미료, 소금 그리고 과일채소에 원래 존재하는 영양소와 태국 보건부와 태국식약청에서 허용하는 식품 첨가물만 첨가할 수 있다.
- 2.3.과일채소주스음료는 과일채소의 색, 향기, 맛, 영양소와 동일해야 한다.

제 3조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특별소비세 법률 규정(2017)에 따라야하며, 소비세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조건은 아래와 같다.

- 3.1.과일채소주스음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최소 1리터 이상의 음료 샘플을 소비세국에 보내어 검사 받아야 한다.
- 3.2.소비세국 담당자가 요청 시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원재료를 보내야한다.

제 4조

과일채소주스음료 제품의 포장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4.1.제조사 / 수입자 이름
- 4.2.제조공장 주소 / 수입자 주소
- 4.3.음료 이름
- 4.4.상표
- 4.5.음료의 주성분
- 4.6.내용량

4.7.유통기한

4.8.태국 식약청 번호(‘어여넘버’, 13자리 숫자)

제 5조

과일채소주스음료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에 해당지역 소비국에 소비세율 0% 혜택 신청을 해야 한다.

제 6조

수입업자는 제 4조의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세국에 제출하고 첫 수입 전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세 0% 혜택을 받은 이후 혜택을 받은 음료수의 내용량이나 포장 용기의 크기가 변경되면 수입하기 전에 소비세국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음료의 재료 및 비율이 전과 같으면 변경된 내용량이나 포장 용기 크기 정보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제 7조

과일채소주스음료 소비세 0% 혜택은 신청 후 승인되는 날부터 유효하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 8조

소비세 0% 혜택을 받은 과일채소주스음료가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면 소비세국 담당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무작위로 선별하여 1년에 최소 1회 검사한다. 생산일이 동일한 제품 1리터 2개 제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소비세국과 Area excise office에서 각각 보관, 기록하여 증거로 남긴다. 해당 샘플은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에 의해 실행된다.

제 9조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소비세 0% 과세는 소비세 0% 혜택 제 1조, 제 2조의 조건 및 제 3조, 제 4조, 제 6조의 기준에 준수하지 않는 음료의 경우 소비세 0%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의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017년 제정된 소비세 세율에 관한 법률 02.03 (2)에 따라 세율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 및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제 10조

납세자가 소비세 0% 혜택 자격이 없는 경우 소비세국은 법률에 따라 세율 및 벌금 그리고 추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1조

소비세 0% 혜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 및 처리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스 샘플을 검사 받을 수도 있다.

본 공지의 제 11조 이외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세국 공지 2019년 1월 9일
Phachara Anantasilp
소비세국 국장

과일채소주스음료의 재료의 혼합비율 목록

구분	음료 종류	주원료 최소 함유량(%)	구분	음료 종류	주원료 최소 함유량(%)
1	접시꽃	20	36	Thai Blueberry	20
2	바나나	20	37	Plango	20
3	용과	20	38	스타구즈베리	20
4	잭푸르트	20	39	파파야	20
5	น้ำคอกแลน	20	40	망고스틴	20
6	칸탈푸프(melon)	20	41	종려과	20
7	람부탄	20	42	사포딜라	20
8	로즈애플	20	43	Langsad	20
9	무환자	20	44	Long Kong	20
10	น้ำตะคร้อ	20	45	용안	20
11	Bilimbi	20	46	Lychee	20
12	Palm Juice	20	47	Toddy Palm	20
13	머스크메론	20	48	Noni	20
14	수박	20	49	카리싸	20
15	석류	20	50	น้ำลูกหยี	20
16	두리안	20	51	น้ำลูกหว่า	20
17	가시여지	20	52	딸기	20
18	매화	20	53	오렌지	20
19	구아바	20	54	왕굴	20
20	น้ำพื้ลังกาสา	20	55	가자나무	20
21	대추	20	56	살라크	20
22	Baby Jack Fruit	20	57	파인애플	20
23	올리브	20	58	Passion Fruit	20
24	น้ำมะกอก	20	59	Mulberry	20
25	타마린드	20	60	마름	20
26	암라	20	61	포도	20
27	토마토	20	62	Sugar can	20
28	Madan	20	63	대추야자	20
29	Bale Fruit	20	64	꽃양배추	20
30	라임	20	65	양배추	20
31	Marian Plum	20	66	장미꽃	20
32	코코넛	20	67	생강	20
33	Starfruit	20	68	당근	20
34	망고	20	69	연(Lotus)	20
35	캐슈너트	20	70	오이	20

구분	음료 종류	주원료 최소 함유량(%)	구분	음료 종류	주원료 최소 함유량(%)
71	น้ำถั่วแขก	20	106	카사바	5
72	Long Bean	20	107	연씨	5
73	날개콩	20	108	쌀	3
74	완두콩	20	109	밀렛	3
75	주키니호박	20	110	Fingerroot	2
76	น้ำใบเตย	20	111	레몬그라스	2
77	병풀속	20	112	น้ำปญจพันธ์	2
78	น้ำใบย่านาง	20	113	Ginkgo	2
79	청경채	20	114	전복	2
80	배추	20	115	표고버섯	2
81	상추	20	116	영지버섯	2
82	셀러리	20	117	국화차	1
83	카이란	20	118	Cocoa	1
84	น้ำผักตั้งโอ้	20	119	Basil Seed	1
85	น้ำผักตำลึง	20	120	잇꽃	0.3
86	น้ำผักบุ้งจีน	20	121	반대해	0.3
87	Spinach	20	122	선초젤리	0.4
88	Winter Melon	20	123	Mixed Fruit	
89	호박	20	124	Mixed Vegetable	
90	연근	20	125	Mixed Fruit & Vegetable	
91	Aloe Vera	20	※ 123, 124, 125의 경우 1. 해당 목록에 혼합주스음료의 재료가 한 가지만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해당 재료의 최소 함유량만큼 있으면 된다. 2. 해당 목록의 재료가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해당 모든 재료를 합친 함유량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		
92	Lotus Stem	20			
93	아스파라크스	20			
94	น้ำดอกอัญชัน	20			
95	약모밀	10			
96	두유	10			
97	Green Bean	10			
98	깨	10			
99	검정콩	10			
100	팥	5			
101	땅콩	5			
102	해바라기씨	5			
103	옥수수	5			
104	토란	5			
105	고구마	5			

1.과일채소주스음료 세금

종류 (Code)	품 목	소비세율 (2017.09.16~2019.09.30)		소비세율 (2019.10.01~2021.09.30)		소비세율 (2021.10.01~2023.09.30)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02.03 (1)	(ㄱ)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0~6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10	0	10	0	10	0
	(ㄴ)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6~8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10	0.1	10	0.1	10	0.3
	(ㄷ)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8~10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10	0.3	10	0.3	10	1.0
	(ㄹ)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0~14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10	0.5	10	1.0	10	3.0
	(ㅁ)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4이상,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ㅂ)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4~18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19.10.01~21.09.30)	10	1.0	10	3.0	10	5.0
	(ㅅ)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8g이상,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10	5.0	10	

2.과일채소주스음료 세율 0% 혜택 세금

종류 (Code)	품 목	소비세율 (2017.09.16~2019.09.30)		소비세율 (2019.10.01~2021.09.30)		소비세율 (2021.10.01~2023.09.30)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가격에 대한 세율(%)	용량(1ℓ)에 대한 세금(바트)
02.03 (2)	(ㄱ)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0~6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0	0	0	0	0	0
	(ㄴ)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6~8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0	0.1	0	0.1	0	0.3
	(ㄷ)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8~10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0	0.3	0	0.3	0	1.0
	(ㄹ)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0~14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0	0.5	0	1.0	0	3.0
	(ㅁ)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4이상,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ㅂ)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4~18g미만,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19.10.01~21.09.30)	0	1.0	0	3.0	0	5.0
	(ㅅ) 음료 100ml 당 설탕 함유량 18g이상, 다른 감미료 함유 유무는 상관없음			0	5.0	0	